"안양!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"



안 양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

- 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89(2023.01.27.)호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-2596(2023.01.30.) 호와 관련입니다.
- 2.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붙임 [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]와 같이 개정되었으나,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해당됩니다.
- 3. 각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종사자 교육 및 입소자**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집단감염 방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주요 개정사항
 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 - 실내 전체 → <u>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</u>*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 - 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
<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>

- ① 코로나19 <u>의심 증상*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</u> 경우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**고위험군*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하는** 경우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<u>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</u>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- ※ 상기 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나, 강력히 착용 권고함
- 기타 내용 정비: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
- 나. 시행 : 2023, 1, 30,(월) 0시부터 시행
- 붙임 1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 1부.
 - 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(제7판) 1부.
 - 3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(제7판) FAQ 1부. 끝.

저장 : 김성헌 / 노인복지과 (2023-02-01 16:52:51)

안 양 시 장

수신자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, 주야간보호시설 35개소

주무관 **김성헌** 노인시설팀장 이지연 과장 전결 2023. 2. 1. **정향숙**

협조자 주무관 **김민우**

시행 노인복지과-2761 접수

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노인복지과 (관양동) / http://www.anyang.go.kr

전화번호 031-8045-5292 팩스번호 031-8045-6517 / onlywanna@korea.kr / 비공개(5,6)